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503 지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 중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은 별지 2 기재 표의 '재산정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란 및 '재산정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재생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redacted]은행 B)와 C 명의의 계좌([redacted]은행 D) 및 E 명의의 계좌([redacted]은행 F, 이하 C 및 E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redacted]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11,072,863,096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redacted]세무서장은 [redacte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게, 2012. 12. 1. 2002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011,036,201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10,333,577,69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3. 법인세 총 4,174,726,827원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2013. 1. 15. 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로소득세 총 3,544,24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경정 · 고지되었던 법인세액 4,174,726,82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액 3,544,240,75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4.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1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2. 12. 1.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 12. 3.자 법인세, 2013. 1. 15.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3. 2. 1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4. 2. 27.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처분금액을 각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redacted]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재조사결과를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2014. 6. 25. 원고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경정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5. 28.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13호로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5. 10. 29. 위 각 부과처분 중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생제품 업계의 특성상 차명계좌를 거래에 이용하였을 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의 대부분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재생제품 판매대금을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아래와 같이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가) 2002년, 2003년, 2007년의 경우 원고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2004년, 2005년, 2006년의 경우 원고는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그 차액(원고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수시로 차입한 금원으로서 매출과는 무관한 금원이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 원고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을 모아 두었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 최종매수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최종매수인이 법인계좌로 그 액수의 금원을 입금하여 주면, 원고가 위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을 되돌려 주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다. 판단

1)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2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429,867,40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283,536,250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713,403,654원(= 429,867,404원 + 283,536,250원)보다 큰 941,288,9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3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693,971,114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450,049,318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1,144,020,432원(= 693,971,114원 + 450,049,318원)보다 큰 1,401,816,3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7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14,293,037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007,847,000원인데, 원고는 그 합계인 2,522,140,037원(= 1,514,293,037원 + 1,007,847,000원)보다 큰 2,603,902,3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출로 신고한 이상, 원고가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재생제품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나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을 전부 매출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매출액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상이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재생제품업계 유통구조의 특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이상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redacted]세무서장이 그 매출누락액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redacted]세무서장의 2014. 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2년도, 2003년도, 2007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004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265,353,919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868,288,923원이며, 원고는 총 1,803,051,07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② 2005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69,573,031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308,414,123원이며, 원고는 총 2,484,615,59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 ③ 2006년도 원고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08,746,393원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566,942,000원이며, 원고는 총 2,784,343,91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도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H 역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에 매출액의 축소를 통한 탈세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현재의 우리나라 세정 현실을 더하여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경우 원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하여 매출신고를 한 금원을 뺀 아래 표 중 차액(매출누락액) 란 기재 상당액은 일응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원 상당액 이외에 차명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2014. 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 금원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한도에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액	법인계좌 입금액	차명계좌 입금액	차액(매출누락액)[1]
2004년도	1,803,051,075	1,265,353,919	868,288,923	330,591,767
2005년도	2,484,615,592	1,369,573,031	1,308,414,123	193,371,562
2006년도	2,784,343,915	1,508,746,393	1,566,942,000	291,344,478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014. 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위법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2014. 6.

1) (법인계좌 입금액 + 차명계좌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매출누락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년도 내지 2011년도의 경우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계좌 입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원고의 대표자인 H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거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아니하였고, 장부 등 아무런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을 모아 두었다가 최종매수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최종매수인이 법인계좌로 그 금액을 입금하여 주면, 위 최종매수인에게 차명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을 되돌려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형태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최종매수인들도 대부분 원고 주장과 같은 형태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H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차명계좌 유입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redacted]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장의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밝힌 차명계좌 입금 금액 중에서 원고가 그 입금액과 관련된 증빙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부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동세무서장이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2014. 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동세무서장의 2014. 6. 25.자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 부과처분 중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바, 이 사건 처분 중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액 및 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및 근로소득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및 근로소득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도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액 및 근로소득세액이 감액됨에 따라 재산정된 각 지방소득세액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및 근로소득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은 별지 2 표의 '재산정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란 및 '재산정된 지방소득세(소득세분)'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별지 1

■ 2013. 3. 7.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과세연도	처분금액(원)
2002년	33,384,040
2003년	50,232,560
2004년	59,764,970
2005년	83,021,500
2006년	84,949,510
2007년	79,142,430
2008년	39,635,740
2009년	25,116,640
2010년	30,599,630
2011년	19,378,290

■ 2013. 3. 7.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

과세연도	처분금액(원)
2002년	23,929,470
2003년	32,071,240
2004년	39,811,820
2005년	60,991,490
2006년	65,644,710
2007년	58,469,370
2008년	32,274,570
2009년	24,131,440
2010년	31,130,060
2011년	21,412,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6

별지 2

과세연도	당초법인세액(원)	경정법인세액(원)	재산정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원)
2008년	327,514,062	274,191,338	33,182,620
2009년	207,541,321	207,541,321	25,116,640
2010년	252,847,820	252,847,820	30,599,630
2011년	160,124,848	160,124,848	19,378,290

과세연도	당초 근로소득세액(원)	경정 근로소득세액(원)	재산정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원)
2008년	293,405,270	25,523,800	2,807,610
2009년	219,376,860	209,128,010	23,004,070
2010년	283,000,650	283,000,650	31,130,060
2011년	194,656,420	189,720,941	20,869,290